

의안 번호	542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5. 11. 21.

전문위원 김동성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542호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1. 12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1. 14.

### 2. 제안이유

-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및 정책 환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 중심 조직 운영을 위해 일부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한시기구 운영 종료에 따른 내용 반영(안 제2조)
  - '단장' 직위 및 '단' 기구명 삭제
- 나. 한시기구 조항(현행 제5조) 삭제
- 다. 부서 신설에 따른 기구 반영(안 제7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5. 10. 16. ~ 2025. 11. 21.
  - 의 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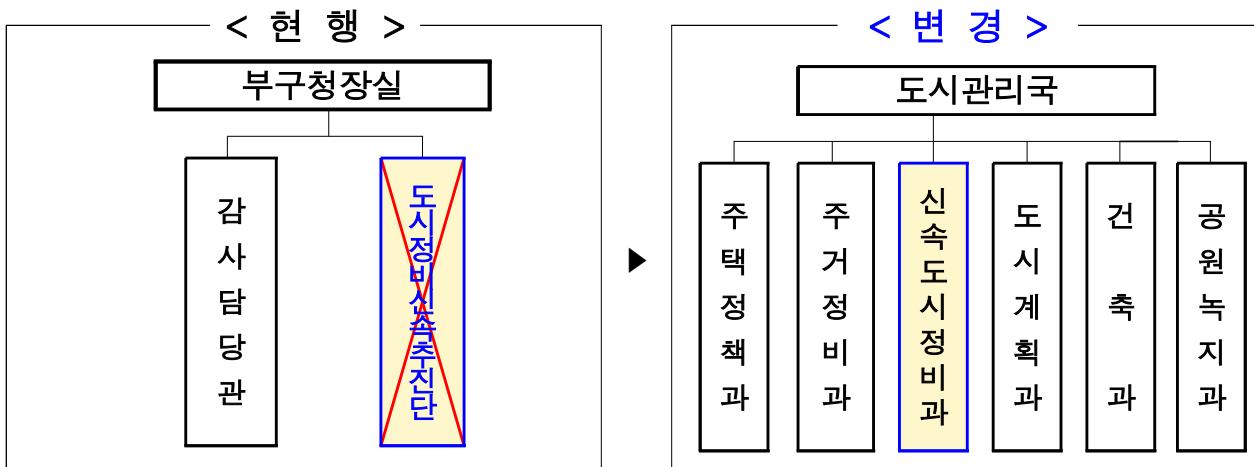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 따라 한시기구로 설치된 도시정비신속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)의 존속기한이 2025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추진단이 수행하던 정비 사업 기능을 도시관리국 내 정식기구인 ‘신속도시정비과’로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 행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.

##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  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  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  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 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- 추진단은 정비사업 갈등관리 수요 증가와 공모방식 등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, 변화한 도시정비사업 환경에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가 필요해짐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 한시기구인 추진단을 폐지하고, 도시관리국 내 정식기구인 ‘신속도시정비과’를 신설하려는 것임.
- 이번 개편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중·장기적 관점을 확보하여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, 주거정비과와의 업무 경계 모호성 등 구조적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.

## < 조직개편(안) >



### 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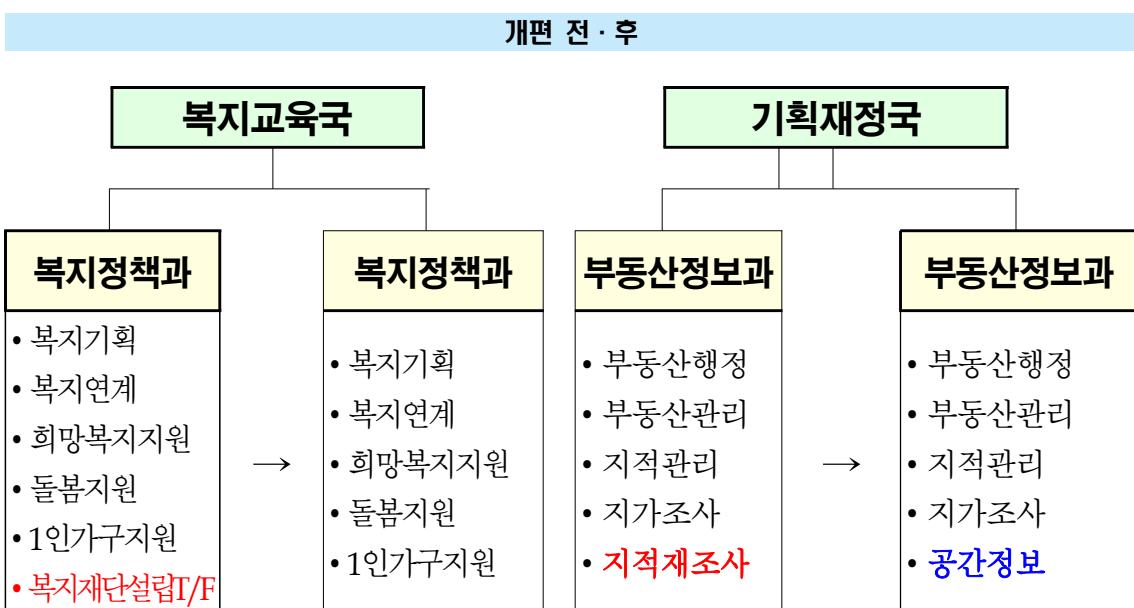
- 안 제2조와 제5조는 추진단 운영 종료에 따라 '단장' 직위와 '단' 조직 명칭, 그리고 한시기구 설치 조항(제5조)을 삭제한 것으로,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 사료됨.

### 〈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현황 전·후 비교〉

구 분	개 편 전	개 편 후	비 고
구본청	6국 1단 1담당관 31과(152팀)	6국 1담당관 32과(151팀)	1단 감소 1과 증가 1팀 감소

- 안 제7조는 추진단 종료에 따라 그 기능을 도시관리국 체계 내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도시정비과를 신설한 것으로, 이는 추진단이 수행하던 주요 기능을 정식조직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.
- 신설되는 신속도시정비과는 재개발·모아타운·소규모정비 등 단위사업을 전담하고, 주거정비과는 광역·제도 중심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주민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.

## 〈신속도시정비과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국 기구 전·후 비교〉



- 그 밖에 성북복지재단 설립(25.07.01) 준비를 위해 설치된 복지정책과 내 복지 재단설립T/F팀을 폐지하고 부동산정보과 내 지적재조사팀을 공간정보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, 이는 실제 업무를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적정하다 사료됨.

## 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대응하여, 정비사업 행정체계를 정식기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.
-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은 한시조직 종료, 정식기구 신설, 관련 조직 기능조정을 반영한 개편안으로, 행정효율성 및 주민편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.